



01. 신청 온·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

- 온라인 :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-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
- www.work.go.kr/kua
- 오프라인 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


02. 심사 및 선정

- 연계된 공적 자료를 통해
가구소득, 재산, 신청인 소득, 취업경험 등 확인
* 조회된 자료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제출
-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참여여부 결정 결과 통지



03. 취업활동계획 수립

-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취업경로 설정
- 지원기간 동안 참여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시기, 방법 등을 수립



04. 취업지원서비스

- 취업상담, 직업훈련, 복지·금융지원연계 프로그램 등
- 취업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



05. 구직촉진수당 지급

-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X 6개월)
-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한 가능



06. 사후관리

-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* (3개월) 지원

* 취업처 정보제공,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, 유선상담 등

Q. 누구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A. 아닙니다. 소득·재산 등의 요건에 부합한 I 유형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Q. I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, 구직활동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나요?

A.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II유형의 경우,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실비성 비용을 취업 활동 비용으로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Q.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다른건가요?

A.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,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 패키지 보다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생계보장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Q.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or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(받았던 경험) 있습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나요?

A. '21.1.1.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. 다만 '20.12.31. 이전,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.

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~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.

신청·접수 온 라 인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
www.work.go.kr/kua

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
* 본격적인 신청·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.

문의 상담 고용센터 ☎ 국번없이 1350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
더욱 자세한 내용은
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!



취업
이름

국민취업지원제도

2021년 1월 1일부터
시작됩니다.

"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!
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
받을 수 있습니다."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?

저소득 구직자, 청년 구직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**취업지원서비스**와 **생계지원**을 함께 제공하는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입니다.

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**2차 고용안전망**으로서,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
※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.

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※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.

취업지원서비스(공통)

1.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·취업·진로상담
 2.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**직업훈련, 창업지원** 및 그 밖의 **일경험 프로그램**
 3.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**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** 등
- ※ 사후관리: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,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

생계지원

I유형



구직촉진수당

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
최대 300만원
(월 50만원 X 6개월) 지원

II유형



취업활동비용

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
최대 265만원 지원

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.

I유형

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
(최대 300만원)을 지원합니다.

• 요건심사형 ※ 법정무지출

15 ~ 69세의
 구직자

+ 소득·재산 요건 부합
 *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

+ 취업경험 보유
 *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

• 선발형 ※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

1. 청년층 ※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

- 18~34세 구직자로서
-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2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3억원* 이하인 청년
- *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

2. 비경제활동인구 ※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

- 15~69세 구직자로서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



2021년 기준 중위소득

• 기준 중위소득의 50%

'요건심사형'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금액(원)	913,916	1,544,040	1,991,975	2,438,145	2,878,687	3,314,302	3,748,599

• 기준 중위소득의 120%

'청년특례 선발형'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금액(원)	2,193,397	3,705,695	4,780,740	5,851,548	6,908,848	7,954,324	8,996,638

II유형

※ 기존 취업성공패키지

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.

• 저소득층(15~69세)

·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60% 이하의 구직자

• 특정계층(15~69세)

1.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
2. 북한이탈주민
3. 여성가장
4. 결혼이민자
5.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
6. 신용회복지원자
7. 위기청소년
8. FTA 피해실직자
9. 건설일용근로자
10.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
11. 미혼모(부)·한부모
12. 니트(NEET)족
13. 영세자영업자
14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

• 청년층(18~34세)

• 중·장년층(35~69세)

·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구직자



신청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?

• (필수) 취업지원 신청서 ※ 시행규칙 별지

: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